

제8장

자동차경주장 국내 공인 및 검수 규정

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2022년 1월 1일
개정	2023년 1월 1일
개정	2024년 1월 1일

제1조 총칙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자동차경주대회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자동차경주장의 공인에 관하여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의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O항(Appendix O)를 근거로 본 규정을 정한다.

제2조 공인 및 대회의 개최

공인 자동차경주 대회에 사용되는 경주장은 FIA와 KARA의 공인을 필요로 한다. FIA에서 공인된 경주장을 국제 공인 경주장으로 한다.

KARA에 의해 공인된 경주장을 국내 공인 경주장으로 한다.

국제 공인 경주장에서는 FIA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공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내 공인 경주장에서는 KARA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공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공인 자동차 경주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설 : 경주장의 모든 시설이 항상 설치되어 있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경주장
2. 준상설 : 경주장의 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영구적으로 대회 개최 때마다 사용될 수 있는 경주장
3. 임시 : 경주장의 모든 설비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어 특정 대회에 사용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건설되는 경주장

국제 및 국내 자동차경주장의 등급은 아래와 같다.

구분	등급	내용
국제 등급	1, 1E, 1T	무게/출력비가 1 kg/hp 미만의 경주차 레이스 가능
	2, 2E, 2T	무게/출력비가 1~2 kg/hp 사이의 경주차 레이스 가능
	3, 3E, 3T	무게/출력비가 2~3 kg/hp 사이의 경주차 레이스 가능
	4, 4E, 4T	무게/출력비가 3 kg/hp를 초과하는 경주차 레이스 가능
국내 등급	1	국제 2등급 및 이에 준하는 조건 이상을 충족하는 경주장
	2	국제 3등급 이하, 국제 4등급 및 이에 준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주장

- * 무게 : 관련 기술 규정에 설명된 드라이버를 포함한 연료가 없는 주행 조건하에서의 차량 중량(kg).
 - * 출력 : 크랭크 샤프트에서 측정된 차량의 최대 출력(hp).
 - * T(Testing) : 해당 등급의 경주차의 테스트 및 조작능력 시연을 목적으로 한 라이선스 등급
 - * E(Electric) : 전기 구동 경주차의 레이스를 위한 라이선스 등급
- 2024 FIA ISC Appendix O Article 6 참조

제4조 공인 신청 자격

KARA에 경주장 공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경주장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공인 후 공인 신청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그 시점에서 해당 경주장의 공인은 무효가 된다.

1. 상설 : 경주장을 소유한 법인·단체 또는 해당 경주장의 운영을 위임 받은 단체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준상설 : 경주장을 소유한 법인·단체 또는 해당 경주장의 운영을 위임 받은 단체 또는 공인기간 동안 해당 경주장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이 되어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3. 임시 :
 - 1) 신청하는 경주장을 소유한 법인·단체 또는 해당 경주장의 운영을 위임 받은 단체 또는 공인기간 동안 해당 경주장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이 되어 있는 단체
 - 2) 신청자는 경주장 소유자로부터 대회 개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유효한 사용 계약을 완료 한 단체

제5조 공인 절차

국내 공인 경주장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 공인 신청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구비하고 신청비용과 함께 대회 개최 3개월전까지 KARA에 신청 한다.
2. 갱신 : 갱신 절차는 공인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신청서 및 첨부 자료를 구비하고 신청비용과 함께 KARA에 제출한다.

서킷 라이선스는 기간 만료시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재 신청할 경우 신규 등록으로 간주되어 연구 행정비등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FIA

국제등급 라이선스의 갱신 절차도 동일하게 처리된다.(FIA Appendix O Article 3.2 참조)

FIA 국제 스포츠 캘린더 및 KARA 국내경기 캘린더에 등록된 어떤 대회의 연기 또는 취소가 대회에 부적합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이는 FIA 월드모터스포츠위원회 및 KARA의 이사회에 회부되어 대회에 부적합한 조건으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 첨부 서류 (각 1부 : 인쇄본과 전자문서)

- 1) 대회 내용 설명서 (신규 또는 변경시에만 제출) :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대회 및 그 참가 차량의 등급을 상세히 기입한다. 또한 임시 경주장의 경우 해당 대회의 특별 규칙서 초안을 함께 제출한다.
- 2) 지도: (신규 또는 변경시에만 제출) 50,000분의 1 이상의 정확한 지도에 다음의 소재를 기입한다.
 - (1) 경주장의 위치
 - (2) 지정 병원의 위치 (등급 표시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 (3) 주요 도로의 진입로 또는 근처 철도에서의 진입로
 - (4) 소방서
 - (5) 경찰서
- 3) 경주장의 도면 : (신규 또는 변경시에만 제출) 경주장의 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할 것
 - (1) 경주장의 기본 설정
 - ① 주행방향 ② 횡단 경사 ③ 종단 구배 ④ 곡률 ⑤ 총 수용 관중 ⑥ 총 스탠드 좌석 ⑦ 주차장 수용대수(관람객용)
 - (2) 라인
 - ① 출발선 ② 결승선 ③ 계측 라인 ④ 적기 라인
 - (3) 대회용 시설
 - ① 관제실(레이스 컨트롤) ② 사무국 ③ 계측실 ④ 심사위원실 ⑤ 오피셜 포스트

⑥ 스타트 포스트 ⑦ 피트 ⑧ 검차장 ⑨ 트랙 CCTV

(4) 설비

① 피트 진입 경보 장치 ② 계측기 ③ 신호등

(5) 피트 구역

① 피트 입구 로드 ② 피트 출구 로드 ③ 피트레인, 패스트 레인, 작업 레인 ④ 페널티 스톱 구간 ⑤ 피트 입구 및 출구 신호등 ⑥ 피트 개러지 ⑦ 시그널 플랫폼

(6) 트랙 방호시설 및 측면시설

① 모바일 월 ② 가드레일 ③ 타이어 배리어 ④ ①~③ 이외의 방호시설 ⑤ 서비스로드 ⑥ 연결통로 ⑦ 연석 ⑧ 자갈지역(gravel bed) ⑨ 관중석 ⑩ 교량 ⑪ 기타 시설

(7) 기타

① 의무실 ② 헬기장 ③ 주차장 ④ 주유소 ⑤ 미디어 센터 ⑥ 브리핑 룸

4) 코스 및 시설의 설명서 : (신규 또는 변경의 경우 미제출)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1) 코스

① 경주장의 개요 : 총면적, 트랙면적, 피트 면적, 패독 면적, 검차장 면적, 주차장 면적

② 트랙의 길이(m) : FIA 대회규칙 부칙 O 에 의거 측정된 값

③ 코스의 폭 : 트랙의 최대 폭과 최소 폭, 안전지대의 최대 폭과 최소 폭 기재

(2) 신호등

① 스타트 신호 형태 ② 포스트 신호의 형태

(3) 응급 시설

① 의무실 개요 ② 지정병원 개요(등급 및 경주장에서의 거리, 소요시간) ③ 설비 및 비품 ④ 구급차 대수 ⑤ 구조용 차량 및 대수 ⑥ 소화기 보유 종류 및 개수

(4) 기타 KARA가 요구하는 사항

제6조 경주장의 검수

KARA는 FIA가 정하는 규칙·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한다. 단 경주장의 지리, 지형 등 특수한 조건 및 개최되는 대회 특성을 감안하여 FIA가 정하는 규칙·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 검수는 KARA가 경주장의 안전에 대한 권고와 지도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1. 검수

1) 경주장의 검수는 다음의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1) KARA의 공인 경주장으로 신규 또는 갱신 시 실시

(2) 모든 공인 경주장은 매년 공인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안전 및 기본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실시 항목은 다음과 같다(관련 세부 사항은 ISC Appendix O. 12조 참조).

① 트랙 표면 ② 트랙 가장자리 및 버지(verges) 구역 ③ 가드레일 ④ 타이어 배리어 ⑤ 관람객 및 안전펜스 ⑥ 연석 ⑦ 배수 및 배수구 ⑧ 서비스로드 ⑨ 서킷 마킹 상태 ⑩ 포스트 사이의 시야확보 ⑪ 계측 장치, 신호등 및 CCTV ⑫ 자갈 지대 ⑬ 복구된 배리어 상태

(3) 기존 KARA 공인 경주장에서 코스 또는 시설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KARA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임시 대회장의 경우 경주장 공인 신청자는 신청자 및 대회 주최자는 대회 2주 전까지 검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임시로 시행되는 검수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인 신청자 또는 대회 주최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KARA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

2. 검수자는 FIA 또는 KARA가 지명하는 사람이 실시하며 검수 중 언론 등 관계자 이외의 입회는 금지된다.

3. 검수자는 라이선스의 신규 또는 갱신 시 다음항목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한다.

1) 경주장에 적합한 최고 공인 대회의 결정

- 2) 경주장에 적합한 대회 차량의 구분과 최대 출전 대수 산정
 - 3) 피트레인의 통과 속도 및 피트 설비의 확인
 - 4) 경주장 상황 전반의 확인
 - 5) 관람객 방호 시설의 확인
 - 6) 소화 및 구급 의료 시설, 차량 및 장비의 확인
 - 7) 대회장내 통신 설비 전반의 확인
4. 기타 필요한 사항

KARA는 공인 신청자에게 검수의 일정, 경비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연락 및 확인을 한다. 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인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7조 검수 결과 보고

KARA는 검수 종료 후 검수 보고서를 공인 신청자에게 검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달한다. 공인 신청자는 검수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그 보고서는 최종본으로 확정되며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및 완성 시한 등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신청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한다.

검수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KARA와 공인 신청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KARA가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만약 코스에 복수의 레이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검수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제8조 공인 라이선스의 발급

대회장 라이선스는 검수 시 제기한 모든 권고 및 지도, 최종 검수 보고서에 따른 필요 조건을 라이선스 유효 기간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KARA 국내 공인 경주장 라이선스” (이하 라이선스)가 발급된다. 라이선스는 경주장에서 안전의 최소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KARA는 라이선스를 철회, 정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 KARA는 경주장의 최소 안전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경주장의 안전 담당자자는 대회 개최 시 안전과 관련된 조직에 관여하고 있어야 한다.)

2.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FIA 또는 KARA가 인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안전 기준에 따라 정해진 유효기간 까지만 적용된다.
3. KARA는 라이선스와 별도로 매년 공인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안전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며 해당년도 말까지 유효한 허가증을 발급한다. 안전시설의 검수 시 최소 안전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공인대회의 개최를 제한하거나 라이선스를 철회, 정지 할 수 있다.
4.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는 FIA 국제스포츠규정 및 KARA 국내스포츠규정 및 기타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각 경주장은 ISC 부칙 H항 부록 1에 있는 응급 서비스 및 관측 신호와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각 테스트에서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5. 경주장에서는 FIA 또는 KARA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수 당시 경주장 구성과 설치 방법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6. 안전 표준에 따라 작성된 경주장의 라이선스 발급 후 테스트, 연습, 각종 대회에서 자동차의 운전석이 크게 훼손되거나 사망 등 심각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주장 담당자는 세부 리포트 작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상황에 따라 선수의 부상, 자동차/경주장에 대한 손상에 대한 내용이 제출되어야 한다. 국가 당국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KARA는 FIA에 가능한 자동차 비디오 녹화 또는 사고 직후 장면, 차에서 나온 팀 데이터 기록, 차의 상태에 대한 엔지니어의 보고서, 의료 보고서, 오피셜 등 목격자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7. 라이선스의 내용
 - 1) 공인의 종류
 - 2) 유효기간
 - 3) 트랙의 길이
 - 4) 진행 방향
 - 5) 폴 포지션(Standing & Rolling Start)
 - 6) 최대 결승 출전 대수
 - 7) 개최 가능 경기의 형태
 - 8) 출전 가능 차량의 등급

9) 피트레인 통과 속도

10) 기타

제9조 유효 기간

경주장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라이선스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까지 유효하다.
임시 경주장의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대회 개최 기간 동안으로 한정된다.

제10조 갱신 신청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1조 임시 허가

갱신 신청 시에 검수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최종 완료까지 최대 12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그 동안은 조건부 임시 허가증이 발급된다.

제12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 규정
